

제12989호

관 보

1995. 4. 15. (토요일)

도시재개발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
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.

-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주택과(920-3380~4)와
돈암3-2지구주택개발조합(927-1126)에
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5년 4월15일

성 북 구 청 장

○사업시행자의 주소, 성명 : 돈암3-2지구주택개
량개발조합장 오중석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2가 278

◎평택군고시제1995-14호

-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지역 국토이용계획을 국토
이용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
제1항,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
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
고시합니다.
- 관계도서는 평택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
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95년 4월15일

평 택 군 수

-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 : 별항
-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도 : 실음 생략
- 토지이용계획

구	분	면적(m ²)	구성 (%)	비	고
제		55,261	100		
공	장	용 지	8,742	15.82	생산시설
지	원	시 설	1,685	3.05	사무실, 수위실등
공	장	지원시설			
소	계	44,834	81.13		
도	로	3,010	5.45		
주	차	장	1,965	3.56	
운	동	장	1,287	2.33	
녹	지	11,138	20.16		
기	타	27,434	49.63	야적장, 야외작 업장	

라. 개발 및 보전계획도 : 실음 생략

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조서

○용도지역

행 정 구 역	고 시 면 적		준 도 시 지 역		준 농 림 지 역	
	기	정 변	기	정 변	기	정 변
평 택 군	356.131	351.131	10.441	10.496	127.203	127.148
	(2.669)	(2.669)			(1.121)	(1.121)
진 위 면	36.256	36.256	0.934	0.989	13.395	13.340
	(2.285)	(2.285)			(0.737)	(0.737)

○용도지구

행 정 구 역	계		시설용지지구		비	고
	기	정 변	기	정 변		
평 택 군	28.386	28.441	0.397	0.452		
진 위 면	0.934	0.989	-	0.055		

○변경사유 : 축전지 제조업 공장설립을 위함.

- 위치 :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갈곶리알원

- 면적 : 0.055km²

- 변경내용 : 준농림지역(0.055km²)

→ 준도시지역(0.055km²)

(시설용지지구)

- 관리번호 : 12-3-5

◎평택군고시제1995-15호

- 경기도고시 제1994-83호('94. 3.29.) 및 경기도
고시 제1994-413호('94.12.28.)로 결정된 팽성
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
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에

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
고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평택군청에 비치하여
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

- 본 지적승인사항은 금회 변경부분에 대해서 효
력 발생하며, 지정 지적승인 사항도 계획 효력이

제12989호

관 보

1995. 4. 15. (토요일)

유효합니다. 1995년 4월15일				결정고시지적승인 면적(m ²)			
평택군수				구분			
1. 용도지역지적승인조서				일반상업지역			
				자연녹지지역			
합계				3,180,000			
주거지역				1,038,600			
일반주거지역				1,012,200			
준주거지역				26,400			
2. 용도지구지적승인조서				도면표시번호			
				지구의세분위			
				결정고시지적승인 면적(m ²)			
1 자 연 안정리, 송화리				52,000			
취락지구 218-16일부							
3. 도시계획시설지적승인조서							
1) 도로지적승인조서				연장(m)			
등급	유별	번호	폭원 (m)	기	능	결	정
도로	1	2	25	보조간선	1,250	1,250	남산리
				도로			대 1-1
중로	2	1	15	"	2,360	2,360	안정리
							1호광장
"	2	3	15	"	150	150	안정리
							중 2-1
"	3	2	12	"	790	790	송화리
							대 1-1
"	3	5	12	"	490	490	안정리
							대 3-2
"	3	6	12	"	470	470	안정리
							대 3-1
소로	2	3	8	국지도로	107	107	안정리
							209-3대
							중 3-1
"	2	4	8	"	480	480	안정리
							210-11전
							중 1-1
"	2	9	8	"	98	98	송화리 659-1도
							중 1-1
"	2	10	8	"	107	107	안정리
							41-387대
							중 3-6
"	2	51	8	"	220	220	객사리 61-4도
							구역계
"	2	54	8	"	210	210	객사리 39-2전
							소 2-42
"	2	55	8	"	170	170	송화리 164도
							중 3-1

제12989호

관 보

1995. 4. 15. (토요일)

2)공원시설지적승인조서

도면표시

번	호	공 원 명	공원의세분 위	면 적(㎡)		비	고
				치 결	정 지적승인		
9		9 호 공 원	어린이공원	객사리 87-1	1,500	1,500	
10		송 화 공 원	근 름 공 원	송화리 106-1	35,000	35,000	

3)광장시설지적승인조서

도면표시

번	호	광 장 명	시설의세분 위	면 적(㎡)		비	고
				치 결	정 지적승인		
1		1 호 광 장	교 통 광 장	안정리 129-1	6,800	6,800	

4)녹지시설지적승인조서

도면표시

번	호	시 설 명 위	면 적(㎡)		비	고
			치 결	정 지적승인		
1		완 충 녹 지	대 로 1-1호 선변	24,000	24,000	폭 10m

5)자동차정류장시설지적승인조서

도면표시

번	호	시 설 명 위	면 적(㎡)		비	고
			치 결	정 지적승인		
1		여객자동차터미널	안정리 192-10	8,500	8,500	

◎경상북도공고제1995-94호

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합니다.

1995년 4월15일

경상북도지사
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

1. 대상지역

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및 공성면 용안리 전역

2. 지정기간 : 1995년 4월15일~1998년 4월14일 (3년간)

3.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

지 역 면 적

○도시계획구역안

주거지역 및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270㎡초과

상업지역 330㎡초과

공업지역 990㎡초과

녹지지역 330㎡초과

○도시계획구역밖

농 지 1,000㎡초과

임 야 2,000㎡초과

농지 및 임야외의 토지 500㎡초과

※위의 면적이하의 토지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◎경상북도공고제1995-95호

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1995년 4월15일

경상북도지사

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지정변경

1. 건설부공고 제1992-103호('92. 8.18.)로 기지정한 토지거래계약 신고구역중 다음의 대상지역을 재적합.

○재적되는 지역 : 경북 상주시 청리면 및 공성면 용안리

2. 재적일 : 1995년 4월20일

◎경상남도공고제1995-101호

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

1995년 4월15일

경상남도지사

1. 대상지역 :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으며, 해당지역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해 지정한 농업진흥지역은 제외함.

시 군 대 상 지 역
합 천 군 가야면 대전리

평택군 고시 제 8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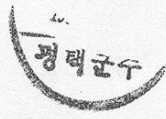


고 시 (안)

1. 경기도 고시 제1994-83호('94. 3. 29) 및 경기도 고시 제1994-413호('94. 12. 28)로 결정된 팽성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지적 승인 도서 사본을 평택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
2. 본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변경부분에 대해서 효력 발생하며, 기정 지적승인 사항도 계속 효력이 유효합니다.

1995 년 4 월 8 일

평 택 군 수



평성 도시계획 지적 승인 조서

1995

평 택 군

1. 용도지역 지적승인 조서

(단위 : m²)

구 분		결정 고시 면적	지적 승인 면적	비 고
합 계		3, 180, 000	3, 180, 000	
주 거 지 역	계	1, 038, 600	1, 038, 600	
	일반 주거 지역	1, 012, 200	1, 012, 200	
	준 주거 지역	26, 400	26, 400	
일 반 상 업 지 역		167, 200	167, 200	
자 연 녹 지 지 역		1, 974, 200	1, 974, 200	

2. 용도지구 지적승인 조서

(단위 : m²)

도면 표시 번호	지구의 세분	위 치	결 정 고 시 면 적	지 적 승 인 면 적	비 고
1	자연 취락 지구	안정리, 송화리 218-16일부	52, 000	52, 000	

3. 도시계획 시설 지적승인 조서

1) 도로 총괄표

구 분 별	합			대			중			소		
	노 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 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 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 선 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17	7,586	105,668	1	1,250	31,250	5	4,260	58,650	11	2,076	15,768
1 류	1	1,250	31,250	1	1,250	31,250	-	-	-	-	-	-
2 류	10	4,166	50,898	-	-	-	2	2,510	37,650	8	1,656	13,248
3 류	6	2,170	23,520	-	-	-	3	1,750	21,000	3	420	2,520

2) 도로 지적 승인 조서
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 능	연 장 (m)		기 점	중 점	비 고
					결 정	지적 승인			
대로	1	2	25	보조간선 도로	1,250	1,250	남산리 대1-1	안정리 중2-1	노선연장
중로	2	1	15	"	2,360	2,360	안정리 1호광장	안정리 대3-1	선형변경 노선연장
"	2	3	15	"	150	150	안정리 중2-1	안정리 북 측구역계	노선신설
"	3	2	12	"	790	790	송화리 대1-1	안정리 대3-1	노선연장
"	3	5	12	"	490	490	안정리 대3-2	안정리 중3-3	노선신설
"	3	6	12	"	470	470	안정리 대3-1	안정리 중2-1	"
소로	2	3	8	국지 도로	107	107	안정리 209-3대 중3-1	안정리 210-10전 소2-4	노선번호 및시중점 변경
"	2	4	8	"	480	480	안정리 210-11전 중1-1	송화리 60 답 중3-2	선형변경
"	2	9	8	"	98	98	송화리 659-1도 중1-1	송화리 659 도 소2-56	노선신설
"	2	10	8	"	107	107	안정리 41-387대 중3-6	안정리 41-287대 소3-48	노선축소
"	2	51	8	"	220	220	객사리 61-4 도 구역계	객사리 161-2 대 구역계	일부폐지 및 선형변경
"	2	54	8	"	210	210	객사리 39-2 전 소2-42	객사리 85-2 전 소2-42	노선분리
"	2	55	8	"	170	170	송화리 164 묘 중3-1	송화리 151-4 구 소2-56	노선신설

3) 공원시설 지적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공 원 명	공원의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		결 정	지 적 승 인	
9	9호 공원	어린이공원	객사리 87-1	1,500	1,500	경 고 제83호 (1994. 3. 29)
10	송화공원	근린 공원	송화리 106-1	35,000	35,000	"

4) 광장시설 지적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광 장 명	시설의세분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		결 정	지 적 승 인	
1	1호 광장	교통 광장	안정리 129-1	6,800	6,800	경 고 제83호 (1994. 3. 29)

5) 녹지시설 지적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	결 정	지 적 승 인	
1	완충녹지	대로 1-1 호 선변	24,000	24,000	폭 10 m

6) 자동차정류장시설 지적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 (㎡)		비 고
			결 정	지 적 승 인	
1	여객 자동차 터미널	안정리 192- 10	8,500	8,500	

평택군 공고 제 148 호



공 고 (안)

1. 경기도 고시 제1994-83호('94. 3. 29) 및 경기도 고시 제1994-413호('94. 12. 28)로 결정된 팽성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지적승인 및 고시 하였고 이를 공고합니다.

1995 년 4 월 8 일

평 택 군 수

가. 팽성도시계획 지적승인 조서 : 생 략

나. 관 계 도 면 : 생 략

" 깨끗한 선거 - 주지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선거 "

평택군

우: 450 - 150 평택시 비전1동 625번지/전화 (0333) 54-5111-30 / 전송 담당 김 경 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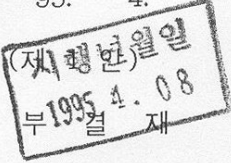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도시 58412 - 1110

시행일자 '95. 4. (년)

(경 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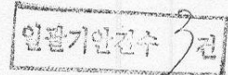
받음 내

참조



취급		군 수
보존	년	712
부군수	이수영	
과 장	최영희	
		공보계장
기 안	유 병 우	김 경 희
		협조

제목 팽성 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및 고시



1. 경기도 도계 58412-254 ('94. 3. 30)호 및 평택군 도시 58412-1611 ('94. 4. 4), 경기도 도계 58412-1217 ('94. 12. 29)호와 관련입니다.

2. 경기도 고시 제1994-83호 ('94. 3. 29)호 및 경기도 고시 제1994-413 ('94. 12. 28)호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된 팽성도시계획에 대하여 동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적승인 및 지적고시코자 합니다.

- 붙임 1. 고 시 문 1 부.
2. 지적승인조서 1 부.
3. 관계도면 1 부. 끝.

(제 2 안)

받음 총 무 처 장 관

참조 법무담당관실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

경기도 고시 제1994-83호 ('94. 3. 29) 및 경기도 고시 제1994-413 ('94. 12. 28) 호로 변경 결정된 팽성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고 시 문 1 부.
2. 안중 도시계획 지적승인조서 1 부. 끝.



도시 58412 -

(제 3 안)

받음 팽 성 읍 장

제목 팽성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지적승인 및 공고

1. 경기도 도계 58412-254 ('94. 3. 30)호 및 동 58412-1217 ('94. 12. 29)호와
관련임.

2. 위호에 의거 변경 결전된 팽성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제2항 및
제4항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동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고시하였기 통지하니 공고문을
읍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기 바람.

붙임 공 고 문 1 부. 끝.



평 택 군 수

” 받는손 사라지면 주는손도 사라진다. ”